

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제1차 정례회 도시·교통위원회
【2019. 6. 17.(월) 10:00】

**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) 변경결정(안에
대한 의견 청취
검 토 보 고 서**



**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도 시 · 교 통 위 원 회**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변경결정(안)에 대한 의견 청취 검 토 보 고 서

2019년 6월 17일
전문위원 이 광 희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19 - 33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 출 일: 2019년 6월 3일
- 라. 회부일자: 2019년 6월 11일

2. 제안이유
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평고개근린공원 내 사유지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해제입안 신청이 접수되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집행가능성이 낮은 시설(공원)을 해제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안)으로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변경 결정(안)
 - 도시계획시설(공원: 평고개근린공원) 변경 결정 조서

구분	공원명	시설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 (해제)	평고개 근린공원	근린 공원	방화동 산97-1 일대 (방화동 121-5일대)	180,089	감) 23,713㎡	156,376	1977.7.14 (건고제138호)	

○ 변경 결정 사유서

공 원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평고개 근린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면적감소(부분해제, 23,713㎡) - 당 초: 180,089㎡ - 변 경: 156,376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인한 사유 재산권의 침해를 해소하고, 집행 가능성이 낮은 시설(공원)을 해제하는 사항임

4. 도시계획사항

- 용도지역·지구: 자연녹지지역
- 도시계획시설: 근린공원, 도로(일부 저축)
- 기 타: 비오톱 1등급(일부 저축)

※ 비오톱: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 군집 서식지의 공간적 경계지역

5. 해제입안 신청 개요

- 신 청 인: 최성희
- 위 치: 방화동 121-5, 121-8, 121-9, 121-10 임야 23,713㎡
- 신청사유: 공동주택 건립
- 대상지 위치



6. 추진경위

- '17. 2. 7.: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입안 신청(1차)
- '17. 2.22.: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입안 거부 처분
- '17. 5.23.: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
- '19. 1.18.: 판결 확정(대법원) - 우리구 패소
- '19. 2.28.: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입안 신청(2차)
- '19. 3.27.: 간접강제 신청 제기
- '19. 4.17.: 간접강제 신청 결정 ※ 결정문 송달일 : '19. 4.25.
- '19. 5.16. ~ 5.30.: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실시

7. 주민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 사항

- 열람공고 실시
 - 게재방법: 신문게재(세계일보, 해럴드경제신문), 서울시보,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시 게재
 - 의견청취기간: 2019. 5. 17. ~ 5. 30. (14일간)
 - 열람장소: 도시계획과, 공원녹지과
 - 주민의견 접수사항: 없음
- 관련부서 협의 내용
 - 협의 부서
 - 서울시 도시계획과, 전략계획과, 시설계획과, 공원녹지정책과, 공원조성과
 - 우리구 전부서 및 방화3동
 - 관련부서 협의 의견: 없음

8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
 나. 대상지 토지 현황

연번	동 명	지 번	지목	면 적(m ²)		토 지 소 유 자		비고
				공부	편입	성 명	주 소	
계		4필지		23,713	23,713			
1	방화동	121-5	임야	21,090	21,090	최 ○ ○	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	
2	방화동	121-8	임야	558	558			
3	방화동	121-9	임야	613	613			
4	방화동	121-10	임야	1,452	1,452			

- 다. 재원조달계획: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해당 없음
 라. 향후계획
- '19. 7월: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 - '19. 7월: 서울시로 결정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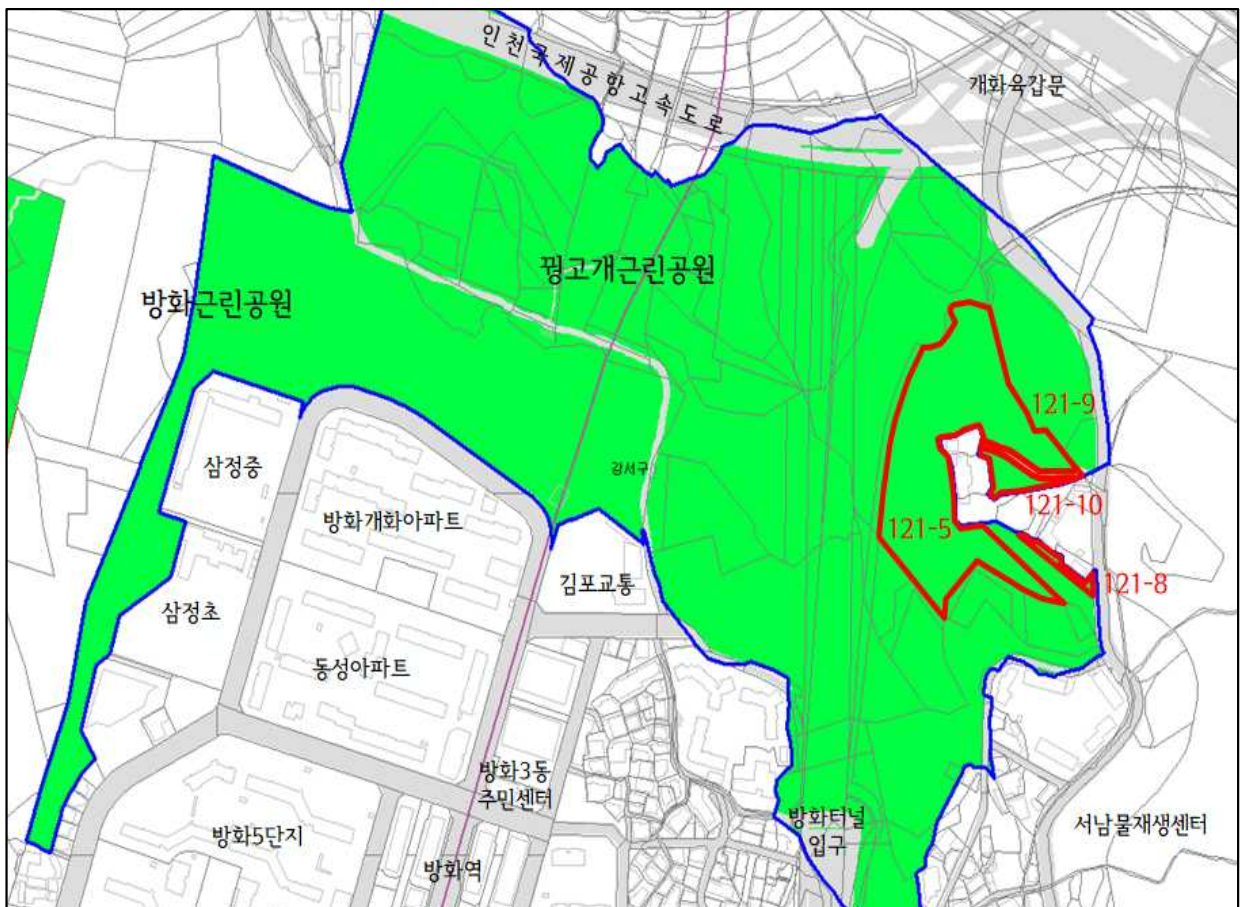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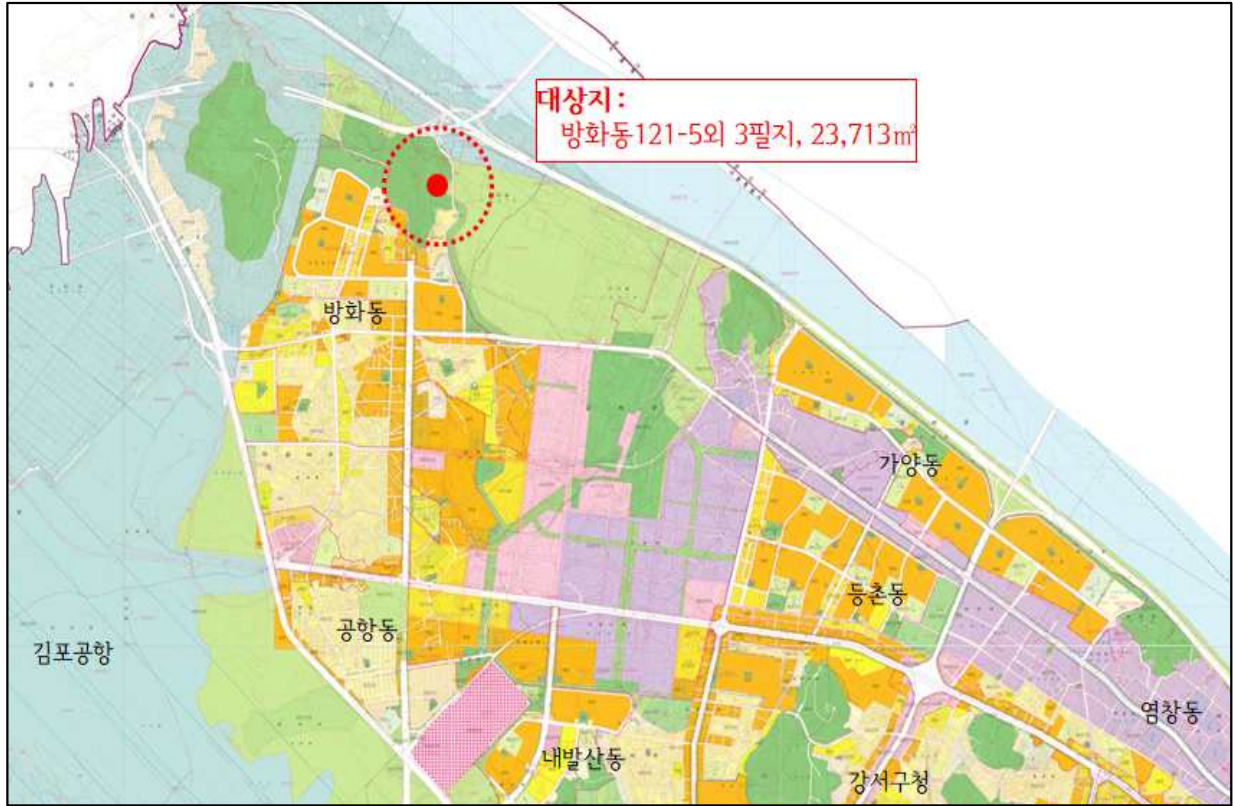
9. 검토의견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- 도시관리계획(공원: 뽕고개근린공원) 변경 결정(안) 내용
 - 공원 변경(해제) 대상지인 방화동 산97-1 일대 뽕고개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그 중 일부 필지가 **비오톱¹⁾** 1등급에 저축되어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집행 가능성 낮은 일부 공원을 해제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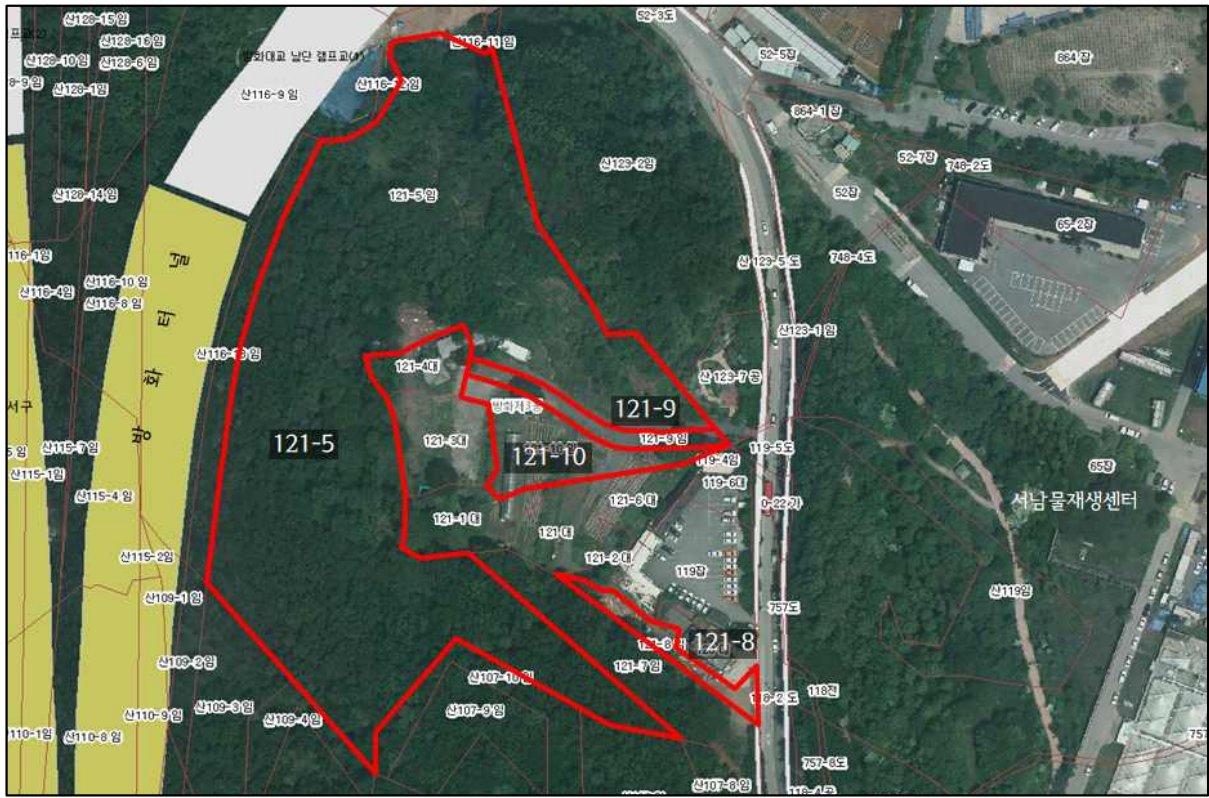
1)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 군집 서식지의 공간적 경계지역

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꿩고개근린공원 내 사유지 토지소유자와의 ‘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우리구의 패소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었고,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 사항에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,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재원 조달계획에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사유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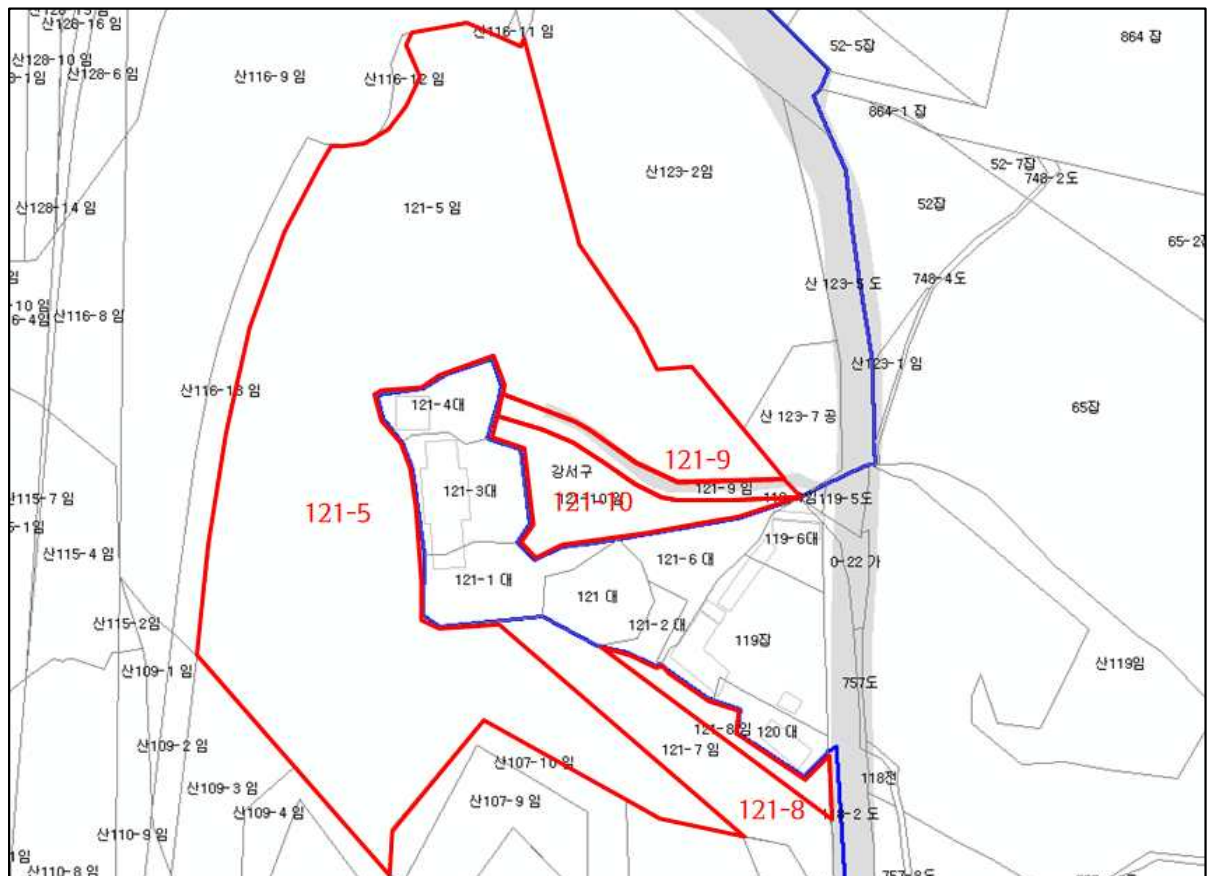
■ 대상지 위치도



■ 항공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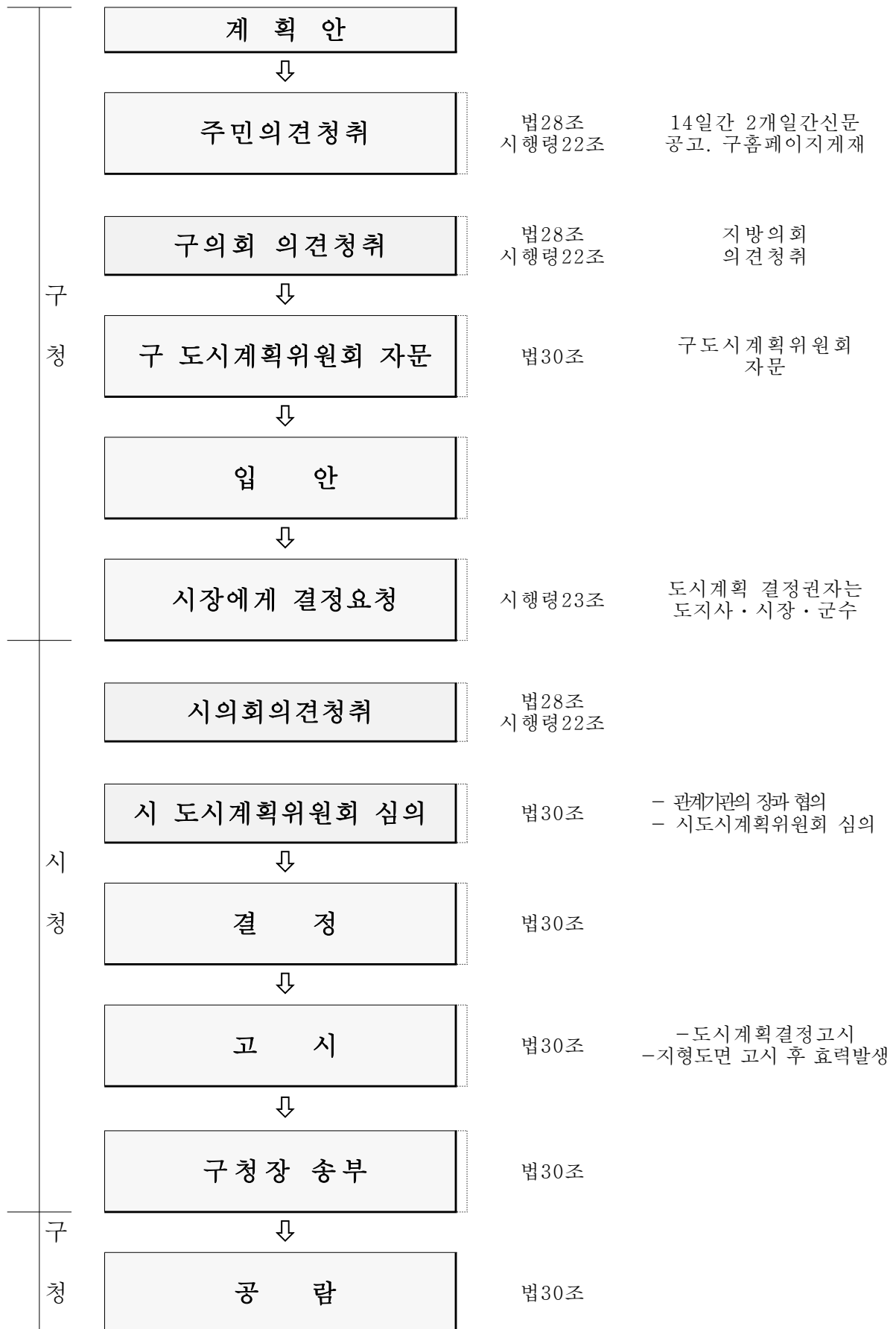
■ 지적도



▣ 공원조성계획도



■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- 시장 결정 사항


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⑤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

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
1.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2.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. 다만, 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가. 도로 중 주간선도로
 - 나. 철도중 도시철도
 - 다.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(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)
 - 라. 공원(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)
 - 마. 유통업무설비
 - 바. 학교 중 대학